

국가산업단지(제49조제1항 관련)

1. 보은국가산업단지
2. 광양국가산업단지
3. 포항국가산업단지
4. 울산·미포국가산업단지
5. 창원국가산업단지
6. 옥포국가산업단지
7. 북평국가산업단지
8. 군산국가산업단지
9. 여수국가산업단지(확장단지 및 이주대책수립단지는 제외한다)
10. 구미2·3국가산업단지
11. 온산국가산업단지
12. 죽도국가산업단지
13. 진해국가산업단지
14. 대불국가산업단지
15. 아산국가산업단지
16.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
17. 남동국가산업단지
18. 반월특수지역(시화지구는 제외한다)
19. 제1호부터 제18호까지 외의 국가산업단지로서 준공 후 10년이 지난 국가산업단지 중 시·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산업단지